

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9월 16일 박종국 의원 외 22인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(2008년 10월 16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박종국 의원)

가. 제정이유

- 「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“의사자”와 “의상자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부천시민과 부천시민이 아닌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-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 이내,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각각 1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

-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-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 및 공적 소개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)
- 의사상자의 신청 방법과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, 시행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가?	○ 그러함.(박종국 의원)
○ 의상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타 시·군과 특별위로금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는데?	○ 지원성격상 보상금이 아닌 특별위로금임.(박종국 의원)
○ 법률에서 의상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?	○ 보상금이 아닌 특별위로금으로 그 성격을 정의함.(박종국 의원)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음
- 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집행부 의견

- 의상자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『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에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의사자(義死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.
2. “의상자(義傷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.

1.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(이하 “의사상자”라 한다)가 된 때
2.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

제4조(의사상자 지원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.

1.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: 3천만원 이내
2.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: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

가. 부상등급 1급·2급: 1천 500만원

나. 부상등급 3급·4급: 1천만원

다. 부상등급 5급·6급: 500만원

라. 부상등급 7급·8급·9급: 100만원

3.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

4.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

5.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

6.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.

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.

제5조(의사상자 예우)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1. 「부천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

2.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

3. 그 밖에 추모·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등

제6조(의사상자 신청)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 등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6호
의결 년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발의년월일 : 2008. 9. 16.

발 의 자 : 박종국 의원
등 23인

1. 제정이유

- 「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“의사자”와 “의상자”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부천시민과 부천시민이 아닌 자가 시 관할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-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 이내,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각각 1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-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 및 공적 소개 등 영예의 존중에

관하여 정함(안 제5조)

- 의사상자의 신청 방법과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, 시행규칙에 대하여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3. 제정 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5. 관계 법령발췌서: 붙임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6. 관련 사업계획서: 해당없음

7. 예산수반사항: 해당없음

8. 사전예고 결과: 해당없음

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에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의사자(義死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.
2. “의상자(義傷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.

1.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(이하 “의사상자”라 한다)가 된 때
2.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

제4조(의사상자 지원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.

1.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: 3천만원 이내
2.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: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

가. 부상등급 1급·2급: 1천 500만원

나. 부상등급 3급·4급: 1천만원

다. 부상등급 5급·6급: 500만원

라. 부상등급 7급·8급·9급: 100만원

3.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

4.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

5.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

6.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.

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.

제5조(의사상자 예우)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1. 「부천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

2.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

3. 그 밖에 추모·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등

제6조(의사상자 신청)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 등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